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1/13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IMMOIL-8CC, IMMOIL-500CC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 제품의 권고 용도 : 현미경 및 유침 대물렌즈용 오일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 :

- 제조자

회사명 : OLYMPUS CORPORATION

주 소 : Shinjuku Monolith, 3-1 Nishi-Shinjuku 2-chome, Shinjuku-ku, Tokyo 163-0914,
Japan

전 화 : +81-3-3340-2111 / 0120-58-0414

팩 스 : +81-3-6901-4251

긴급전화번호 : +44-1865-407333 (Carechem24, 영어)

- 국내공급자

회사명 : 올림푸스한국(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8길 12 (마제스타시티 타워 원 2,3층)

전 화 : 02-6255-3200

팩 스 : 02-6255-3377

긴급전화번호 : 02-6255-3200 (9:00 - 17:00)

2. 유해성 · 위험성

가. 유해성 · 위험성 분류 :

- 건강 유해성 :

- 피부 과민성 :

구분 1

-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

구분 2 (신장)

-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

구분 2 (부신, 간)

- 환경 유해성 :

- 수생 환경유해성 (만성) :

구분 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 그림문자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2/13



- 신호어 : 경고
- 유해·위험 문구 :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신체 중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부신,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십시오.
-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십시오.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대응]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십시오.
-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 증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처치를 하십시오.
-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 노출 또는 노출이 우려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 누출물을 모으십시오.

[저장]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폐기]

-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 가연성 물질 : 본 제품은 연소되지만 쉽게 발화되지는 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3/13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 학 물 질 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1-Phenyl-1-(3,4-dimethylphenyl)ethane	*	6196-95-8	KE-11779	15.0
1,4-Dimethyl-2-(1-phenylethyl)benzene	*	6165-51-1	KE-28454	7.0
1-Phenyl-1-(2,4-xylyl)ethane	*	6165-52-2	KE-11780	12.0
Ethyl(phenylethyl)benzene	*	64800-83-5	KE-14038	6.0
기타 성분 (비유해성)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60.0

※ 식별번호 : KE (Korean Existing Chemical Inventory : 한국기존화학물질목록 등록번호)

※ 관용명 및 이명* / 화학식 :

- 1-Phenyl-1-(3,4-dimethylphenyl)ethane : 4-(1-phenylethyl)-o-xylene / C16H18
- 1,4-Dimethyl-2-(1-phenylethyl)benzene : 2-(1-phenylethyl)-p-xylene / C16H18
- 1-Phenyl-1-(2,4-xylyl)ethane : 4-(1-phenylethyl)-m-xylene / C16H18
- Ethyl(phenylethyl)benzene : Benzene, ethyl(phenylethyl)- / C16H18

※ EC No. :

- 1-Phenyl-1-(3,4-dimethylphenyl) ethane : 228-249-2
- 1,4-Dimethyl-2-(1-phenylethyl) benzene : 228-201-0
- 1-Phenyl-1-(2,4-xylyl)ethane : 228-202-6
- Ethyl(phenylethyl) benzene : 265-241-8

※ 성분 분류** :

- 네 가지 성분(CAS No; 6196-95-8, 6165-51-1, 6165-52-2, 64800-83-5)의 혼합물 :
Xn; R20/21/22-48/22-68/22, Xi; R38, R43, N; R51-53
급성 독성 구분 4 : H302, H312, H33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 H315
피부 과민성 구분 1 : H317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구분 2 : H371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구분 2 : H373
수생환경유해성(만성) 구분 2 : H411
- 1,4-Dimethyl-2-(1-phenylethyl) benzene :
Xn; R48/22-68/22, N; R50-53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구분 2 : H371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구분 2 : H37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4/13

수생 환경유해성 (급성) 구분 1 : H400

수생 환경유해성 (만성) 구분 1 : H410

○ 기타 성분 : 구분 외

** 관련 유해/위험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15항 참조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

- 깨끗한 물로 최소 15분 동안 씻어내고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벌린 채 안구와 눈의 모든 표면을 깨끗이 씻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피부를 씻을 것
- 피부 자극 또는 발진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할 것

다. 흡입했을 때 :

-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할 것
- 불편함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

- 즉시 구토를 유도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여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 입을 씻어낼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자료없음

※ 추가정보 :

- 가장 중요한 급성 및 지연성 증상과 영향 :
 - 급성 영향 : 자료없음
 - 지연성 영향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 및 필요한 특별조치 : 이차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처치 요원은 적절한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 보호구를 착용할 것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 적절한 소화제 : 포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또는 분말소화제
- 부적절한 소화제 : 소방호스로 원기둥 모양의 물줄기를 분사할 경우 화재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5/13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가연성 물질 : 본 제품은 연소되지만 쉽게 발화되지는 않음
- 연소 시 유독 가스 및/또는 흠이 생성될 수도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 초기 화재 시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등을 사용할 것
- 대형 화재 시 포말 소화제 등을 사용하여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임
- 물을 분무하여 주변 시설 등을 냉각시킬 것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화재를 진압할 것
- 화재 진압 시 공기호흡기 및 화학 보호의를 착용할 것
-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진압 시 반드시 자급식 호흡구를 착용할 것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 관계자 이외의 사람 :
 -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머무를 것
 - 즉시 화염, 고열 등과 같은 모든 발화원을 제거할 것
- 응급 요원 :
 - 적절한 보호구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참고)를 착용하여, 눈 및 피부와의 접촉 또는 흡입을 피할 것
 -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시킬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본 제품을 하천 등으로 배출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 소량 누출 시 건조된 흙, 톱밥, 모래 등으로 흡수하여 밀폐 용기에 수거한 후 폐기할 것
- 다량 누출 시 흙 및 모래 등으로 제방을 쌓아 추가 유출을 방지하고 포말로 액체 표면을 덮은 후 빈 용기에 가능한 한 많이 수거할 것
- 누출물 취급 시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접지할 것
- 위험없이 할 수 있을 경우 누출을 막을 것

※ 추가정보 :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및 '13. 폐기시 주의사항'을 적절히 참조할 것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6/13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화염, 정전기, 전기 스파크 등과 같은 발화원으로부터 멀리할 것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할 것
- 흡입하거나 삼키지 말 것
- 눈 및 피부와의 접촉을 피할 것
- 누출을 방지할 것
-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만 사용할 것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을 것
- 오염된 작업복은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지 말 것
- 피해야 할 물질/혼합물 : 강산화제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 모든 보관 용기를 접지하고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 장비를 사용할 것
- 산화제로부터 멀리할 것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할 것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출기준 : 해당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본 제품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조건하에서나 밀폐계에서만 취급할 것
- 취급 및 저장 장소 주변에 세안기와 안전 샤워기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표시할 것

다. 개인 보호구 :

- 호흡기보호 : 유기가스용 방독면,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할 것
- 눈보호 :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손보호 : 적절한 내유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보호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할 것

※ 추가정보 :

- 환경 노출 관리 : 환경으로의 배출을 피할 것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7/13

9. 물리화학적 특성

-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무색 투명한 약간 점성 액체
- 나. 냄새 : 약간 방향족 냄새
-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 라. pH : 자료없음
-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없음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 200°C
- 사. 인화점 : 154°C (Cleveland 개방식)
- 아. 증발속도 : 자료없음
-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자료없음
- 카. 증기압 : 자료없음
- 타. 용해도 : 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음
- 파. 증기밀도 : ≥ 1.0 (공기=1)
- 하. 비중 : 자료없음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 너. 자연발화온도 : < 300°C
-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 러. 점도 : 자료없음
- 머. 분자량 : 자료없음
- ※ 추가정보 :
 - 유동점 : -50°C
 - 밀도 : 0.918 g/cm³ (15°C)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반응성 : 본 제품은 일반적이고 예상되는 저장 및 취급 조건 하에서 비반응성 물질로 간주됨
 - 화학적 안정성 : 본 제품은 빛 또는 열에 안정함
 - 유해반응의 가능성 : 자료없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8/13

- 고열, 스파크, 화염 등과 같은 발화원
- 다. 피해야 할 물질 :
 - 강산화제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료없음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 급성 독성 :
 - 경구
제품에 대한 정보 : LD50 (랫드) > 2,000 mg/kg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LD50 (랫드) = 1,940 mg/kg (수컷), 2,200 mg/kg (암컷)
 - 흡입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LC50 (랫드) > 1.8 g/m³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제품에 대한 정보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피부 접촉 시 인체에 약한 자극을 일으킴
토끼에 약한 자극을 일으킴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토끼 피부에 보통의 자극성임 (일차 자극지수 : 2.8)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제품에 대한 정보 : 토끼에 최소한의 눈 자극을 일으킴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토끼 눈에 자극성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
 - 제품에 대한 정보 :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피부 접촉 시 인체에 매우 약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음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피부 과민성 시험 결과 음성임 (시험방법 : Buehler method)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한 피부 과민성 시험 결과 양성임 (시험방법 : GMPT: Maximization method)
 - 발암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9/13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랫드를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시험한 결과 발암성 영향이나 발암 증진성이 관찰되지 않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한 시험관 내 Ames 시험 및 염색체이상시험 결과 음성임
 - 1,4-Dimethyl-2-(1-phenylethyl) benzene : 시험관 내 Ames 시험 및 염색체 이상 시험 결과 음성임
- 생식독성 :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마우스에서의 최기형성 활성은 관찰되지 않음
 - 1,4-Dimethyl-2-(1-phenylethyl) benzene에 대한 정보 : 동물 시험 결과 최기형성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두통, 메스꺼움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도 있음
 - 1,4-Dimethyl-2-(1-phenylethyl) benzene에 대한 정보 : 랫드를 대상으로 단회 경구 투여 시험 결과, 1,000 mg/kg 또는 그 이상의 용량 단계에서 체중 증가 저하가 관찰되었고, 2,000 mg/kg 또는 그 이상의 용량 단계에서 신장에 대한 영향이 관찰되었음
- 특정 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
 - 1,4-Dimethyl-2-(1-phenylethyl) benzene에 대한 정보 : 반복 투여 독성 시험과 생식/발달 독성 스크리닝 시험(성체 랫드를 대상으로 한 경구 투여 시험)을 결합하여 수행한 결과, 부신 및 간에 대한 영향이 관찰되었음
 - LOAEL (최저독성량) = 12.5 mg/kg/day (수컷)
 - LOAEL (최저독성량) = 200 mg/kg/day (암컷)
- 흡인 유해성 : 자료없음
- ※ 추가정보 :
 -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 (네 가지 물질의 혼합물) : 마우스에 본 물질을 1.5 mg/kg 용량 단계로 2일 동안 투여한 결과 29일 후의 생물농축율은 0.02%임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

- 제품에 대한 정보 : 자료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10/13

- 1,4-Dimethyl-2-(1-phenylethyl) benzene에 대한 정보 :
 - 급성독성 : EC50 = 0.39 mg/L/48시간 (갑각류 (Daphnia magn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 다. 생물 농축성 : 자료없음
- 라. 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 마. 기타 유해 영향 :
 - 본 제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할 것
 - 본 물질은 PBT 및/또는 vPvB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
 - 잔류 제품 및 용기는 관련 법령 및 지역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 폐기물은 허가 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고 유해성 정보 및 안전한 취급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충분히 통보할 것
 - 폐수 또는 본 제품을 함유하고 있는 세정수를 하천 등으로 직접 배출하지 않도록 할 것
 - 하수구, 지면 또는 수역으로 버리지 말 것
-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사용한 용기는 관련 법령 및 지역 규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재활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 번호 : 3082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기타 환경유해물질, 액체 (Environmental hazardous substances, liquid, N.O.S.)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Class 9 (환경유해물질 : 수생환경)
- 라. 용기등급 : III
-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비해당) : 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 운송 전에 용기에 파손, 부식, 누출이 없는지 확인할 것
 - 위험물 및 용기는 전도, 낙하 및 파손되지 않게 적재할 것
 - 운송 시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고 운송 용기가 전도,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11/13

재할 것

- 화물붕괴 방지조치를 확실히 할 것
- 운송 시 사고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서 및 그 외 관계기관에 먼저 통보할 것
- 본 제품 위에 무거운 적재물을 올려놓지 말 것

※ 추가정보

- MARPOL 73/78 및 IBC Code의 부속서 II에 따른 벌크 운송 : 해당없음
- IATA 특별규정 : A197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금지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대상 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중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지정수량 : 2,0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해당 법규의 준수는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본 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련 특정 규제/법률 : 본 제품 및 그 구성성분은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s)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로 간주되지 않는 등 EU의 인체 건강 또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제되지 않음
- 유럽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12/13

- 1999/45/EC에 따른 분류 및 표시 :

유해성 기호 : Xn (유해물질) N (환경유해물질)



위해성 경구 : R48/22 유해함 :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R68/22 유해함 : 삼켰을 경우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R43 피부 접촉 시 과민성을 일으킬 수도 있음

R51/53 수생생물에 유독하며, 수생생태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음

안정성 경구 : S23 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말 것

S36/37 적절한 보호의 및 장갑을 착용할 것

S57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할 것

S60 이 제품과 용기는 반드시 유해폐기물로 폐기되어야 함

S61 자연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자세한 지침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할 것

-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 수행되지 않음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의 유해 위험 문구 및 위해성 경구 :

R20/21/22 흡입 시, 피부 접촉 시 그리고 삼켰을 경우 유해함

R38 피부에 자극성이 있음

R50/53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며, 수생생태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음

H302 삼키면 유해함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32 흡입하면 유해함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 일본 소방법 :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

16.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1. 6. 23. (04 판개정분)

IMMOIL-8CC, IMMOIL-500CC

Page 13/13

가. 자료의 출처 :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OLYMPUS CORPORATION 에서 작성한 영문 MSDS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규정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의 규정에 맞도록 번역, 편집한 것임
- 제조사 MSDS는 2011년 2월 4일에 최종 검토된 것임
- 최초 작성기관명 : 하나캠텍 (Tel. 02-3663-4377)

나. 최초 작성일자 : 2013. 9. 13.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2020. 9. 24. (04판개정분)

라. 기타 :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정보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 및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규의 개정 및 새로운 지식에 의해 개정될 수도 있음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취급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므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적절한 안전 조치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정보 제공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보증하지 않음